



제조물책임법(PL) 대응 방안 ②

지난 호에 PL법과 관련하여 정의, 소비자 피해 및 구제현황, PL법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 호에는 지난 호에 이어 PL법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을 통해 PL법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편집부>

우선 대상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일반인이 그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책임주체 범위는 ① 완성품제조자, 원재료, 부품제조자 ②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나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③ 상품 수입자 ④ 상품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공급자 중 한 가지라도 속하면 모두 책임의 주체가 된다. 손해배상 책임기간은 피해자의 손해발생 인지 후 3년, 소비자에게 상품 인도 후 10년 이내이다.

제조물책임법의 해설

목 적

제조물책임법의 목적은 ‘피해자의 구제’에 있

다. 그러나 소비자만 이 법으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 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범위 : 소비자 및 사용자).

표 1. PL법 관련 용어 설명

제조물	제조물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제조	제품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일반적으로 ‘원재료에 손을 대어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
가공	동산을 재료로 하며 여기에다 공작을 더해, 그 본질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여 가치를 추가하는 것
동산	동산 민법상 부동산 이외의 모든 유체물

손해배상 책임

제조업자 등이 지는 제조물책임의 책임근거 규정으로 고의,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 행위의 특칙임.



제조물

- ①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제외
- 생산자의 위험분산 능력과 배상 능력 부족
- ② 부동산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시킴
(타 국가에서는 부동산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국가도 있음)
- ③ 우리 민법에서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을 말함

제조자

- ① 완성품의 제조자와 원재료·부품의 제조자는 물론 제조물을 수입한 자를 제조자에 포함 한다.
- ② 제조물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더라도 성명, 상호, 상표 및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하여 표시하였거나 제조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 ③ 위의 항은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판매자 등 공급자에 대해 2차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임

결함의 정의

- ①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존재는 책임추궁을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며 결함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 ② '안전성'은 당해 제조물에 내포되어 있는

부품의 안정성 및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올 위험과 관련있는 안전성을 의미

- ③ 결함판단의 주체는 제조자, 소비자도 포함한 '사회일반인'으로 정의
- ④ 결함판단의 시점은 제조자에 의해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이 기준

연대 책임

대부분의 제품이 단순제품이 아닌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지며, 완성품제조자의 외주업체, 협력업체 및 판매자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이 경우 결함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책임의 비율과 상관없이 각자가 손해 전체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면책사유

제조자가 본법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일정한 사정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단, 이는 본 조에 기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미이며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 배상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님) (표 2).

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에 관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한다.



그림 1. 제품결함의 상세내용

면책특약의 효과

피해자에 대해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여 피해자를 보호한다.

소멸시효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 중에 제조물 사용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손해가 발생

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타법과의 관계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제조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표 3).

표 2. 면책사유(제 7 조)의 대상이 되는 사실

제7조면책사유	
△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	
△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	
△ 당해 제조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인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당해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 정하는 강제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 부품제조자의 경우는 그 부품을 조립한 완성품의 설계 또는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표 3. 민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차이

구 분	민 법	제조물책임법
책임요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불법행위·보증책임)	제조물의 결함(무과실·엄격책임)
입증범위 (소비자)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제조물의 결함 여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제조물책임법의 내용

제조물책임법은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마다 간략한 문구를 사용하여 정의되어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며 구체적 해설은 그 이하에 설명한다.